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898
----------	-------

발의연월일 : 2026. 5. 8.

발 의 자 : 전진속 · 남인순 · 이수진
정준호 · 안호영 · 손 솔
백혜련 · 최혁진 · 이개호
서영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혼인 외 출생 아동, 외국인 한부모의 자녀 등 부모의 국적·출생 경위·체류 형태 등으로 인하여 언어·문화·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인해 현행 법률상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포섭되지 못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을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해당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육·교육 지원 규정의 준용 근거와 사회 적응, 학습 지원, 상담 및 서비스 연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제2조제1호다목, 제2조제4호, 제12조제4항제8

호 및 제14조의3 신설).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4호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4.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란 부모의 국적·출생 경위·체류 형태 등으로 인하여 언어·문화·제도 적응에 지원이 필요한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제4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4조의3에 따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 적응, 학습 지원,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용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으로서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0조를 준용한다.

② 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12조제4항제8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나. (생략)</p> <p><신설></p> <p>2.·3. (생략)</p> <p><신설></p> <p>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 ③ (생략)</p> <p>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 7. (생략)</p> <p><신설></p>	<p>제2조(정의) ----- -----.</p> <p>1. -----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나.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다. <u>제4호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u></p> <p>2.·3. (현행과 같음)</p> <p>4. <u>“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란 부모의 국적·출생 경위·체류 형태 등으로 인하여 언어·문화·제도 적응에 지원이 필요한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u></p> <p>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제14조의3에 따른 이주배경</p>

8. (생략)

⑤ ~ ⑦ (생략)

<신설>

아동·청소년의 사회 적응, 학습 지원, 상담 및 서비스 연계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년에 대한 적용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호 다목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으로서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0조를 준용한다.

② 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12조제4항제8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